
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

● 사업목적

신중년의 전문성·경험·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**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**

-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, 중단기 교육·훈련을 통해 노동 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,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
-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 (세분류 213개 직종)으로 확대

● 지원대상

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
※ 지원 제외 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● 지원요건

① 참여신청서를 제출·승인 받은 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

* 단,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승인 후 소급 지원 가능

②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

③ 최저임금 100% 이상의 임금 지급

④ 4대 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⑤ 무기계약 체결*

* 단,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

※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
● 지원수준

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(중견기업은 월 40만원)

	회차별 지원액 (3개월 단위)	연간총액
우선지원대상 기업	240 만원	960 만원
중견 기업	120 만원	480 만원

※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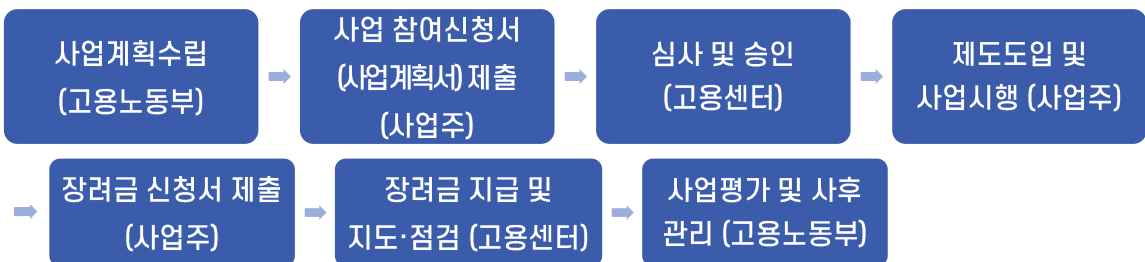
● 지원한도

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로 지원(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)

● 지급기간 및 주기

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(※ 일할, 월할 계산하지 않음)

● 사업추진체계

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
- 부산고용복지+센터 : 051-860-1923~7
051-860-1931
051-860-2072
051-860-2100
-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: 051-760-7210~5
-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: 051-330-9951~5